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21

발의연월일: 2021. 1. 25.

발 의 자:이주환·김기현·김용판

배준영 • 윤창현 • 이명수

이태규・최승재・태영호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도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 지 않은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 이 아닌 자가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 그 표시의 중단, 제거 또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38조 등).

법률 제 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법률 제17037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1항 중 "대한민국식품명인"을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조·가공·조리"를 "제1항에 따라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이 경우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2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8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때

제14조의2의 제목 중 "제품"을 "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제품"을 각각 "식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식품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에 해당 하는지 여부 조사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호의2·제1호의3 또는 제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광고의 중단, 표시의제거 또는 해당 식품의 수거 등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에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는 행위

제38조제2항 중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 칭을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1.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	2
항을 심의한다.	<u></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
	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037호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17037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	및 지원 등) ①
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	
· 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	
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대한민국</u>	<u>해당</u> 분야의 품
<u>식품명인</u> 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
	<u>식품명인</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u>제조·</u>	③ <u>제1항</u>
<u>가공·조리</u> 등을 한 식품임을	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u>농림축산식품</u>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⑤ (생 략)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 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⑦ ~ ① (생 략)
 ⑦ ~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u>제</u>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u>식</u>

능으로 제조·가공·조리
<u>प</u> ो
한민국식품명인
이 경우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
리 등을 한 식품의 범위 및 표
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6
,
<u>.</u>
1.•2. (현행과 같음)
<u>2</u> 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
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
분을 3회 이상 받은 때
3.•4. (현행과 같음)
⑦ ~ ① (현행과 같음)
1117시아에퀴미그리프머이 1

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 (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 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 대한민국식품명인 <u>제품</u>의 표 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 부 조사
- 2. (생 략)
- 3. 대한민국식품명인 <u>제품</u>의 시 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 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신 설>

② (생략)

<u>품</u> 의 사후관리)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
<u>• 조리 등을 한 식품대</u>
한민국식품명인 식품
1 <u>식품</u>
0 (청체기 가야)
2. (현행과 같음) 3식품
3. <u>气色</u>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식품이 제14조제1항에 따
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
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u>조사</u>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 |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의5. (생략) <신 설>

2. ~ 9. (생 략) 제38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 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 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대한 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광고의 중단, 표시의 제거 또는 해당 식품의 수거 등을 명할 수 있 다.
-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1. ~ 1의5. (현행과 같음)

1의6.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 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 니한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 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 품에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 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 는 행위

2. ~ 9. (현행과 같음)

| 제3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용한</u>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u>③</u> (생 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1.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 을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5)</u>	 - <u>제4항</u>	